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2.08.12)

NH-Amundi 법인신종 MMF1호 (펀드 코드 : 45024)

투자 위험 등급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단기채권 위주로 투자하여 주식 혹은 신용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금리(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법인신종 MMF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MMF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부재시 등의 경우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6)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운용액)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3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고리율이 1,000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위험	원본 손실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경제여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 NH-Amundi 법인신종MMF1호

	<b>시장현황 위험</b>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평가위험 (괴리율위험)</b>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장부가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장부가 평가 금액과 시가 평가 금액의 차이(괴리율)에 따라 시가평가로 전환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 부분(미실현부분)이 실현되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요청 등에 따른 보유 채권의 매각시 미실현 손실(괴리율)이 실현되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b>시가평가로 전환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3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5 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경우나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괴리율이 1,000 분의 5 이상 넘어갈 경우,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금리 및 수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li> <li>17 시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li> </ul>	<b>환매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2 영업일 지급</li> <li>17 시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3 영업일 지급</li> </ul>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li> <li>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li> <li>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li> <li>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li> </ul> </li> </ul>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b>집합투자기구</b></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b>수익자</b></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b>수익자</b>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b>수익자</b>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4월 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